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20호 2020. 4. 28(화)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884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 남원시 공고 제2020-889호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0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20-884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남 원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폐지된 용어와 불필요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상위 규정에서 폐지된 용어와 중복된 조항 삭제 (제5조 삭제)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 4)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063-620-6072)로 문의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로, “지급의 절차 기타”를 “지급절차 그 밖에 지급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명예퇴직예정일”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로, “수당지급규정”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를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사망익일”을 “사망한 다음 날”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상”을 각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계급”을 “해당계급”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을 “규칙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중 “조기퇴직예정일”을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로 한다.

제14조 제2항 후단 중 “사망의일”을 “사망한 다음 날”로 한다.

제15조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상”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u>	제1조(목적) ----- 「 <u>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u>

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
 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
 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
 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
 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
 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생략)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
 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퇴직당시의 당
 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생략)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

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
 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 지급절차 그 밖
에 지급에 -----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
 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
 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
 정”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
 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

 ----- 해
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날-----.

<삭 제>

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의 퇴
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
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
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
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
상) ① (생략)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
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 기
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
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
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
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
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
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에
도 -----.
----- 재직기간-----
----- 사
망한 다음 날-----.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
준) ① -----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
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 1. (생략)
-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
무원
- 3. 당해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 4. (생략)

② 삭 제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
 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 ① (생략)
-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
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
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
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
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
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
야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

-----.

- 1. (현행과 같음)
-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
--
- 3. 해당계급 -----
- 4. (현행과 같음)

③ -----
 ----- 규칙
 의 범위 안-----
 -----.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
상자)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
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

상) ① (생 략)

②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 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 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 준)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동일 직(계) 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 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 여야 한다.

1. (생 략)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 무원
3. (생 략)

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망한 다음 날 -----
-----.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 준) -----

-----.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20-889호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남 원 시 장

1. 제정 이유

마을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상담이 어려운 영세 사업
자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세
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 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 가. 마을세무사 위·해촉 및 임기 (안 제3조)
- 나.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안 제4조)
- 다. 상담방법 및 상담실적 관리 (안 제5조~안 제6조)
- 라. 수당 등 (안 제7조)

3. 의견제출

-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 4)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063-620-627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남원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 등 불복청구(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 관련 상담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할 경우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본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

세무사 ○ ○ ○

귀하를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남원시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원시장 0 0 0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제6조 관련)

구 분	상 담 내 용(건)				상 담 방 법(건)				
	계	지방세	지방세 불 복	국세	계	전화	메일	팩스	방문
계									
'00년0분기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제9조 관련)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 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중

남원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제9조 관련)

접수번호	세 무 상 담 기 록 카 드			접 수 일
No.			
상 담 종 류 (V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세 상담 () ◦ 지방세 상담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V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상담 () ◦ 팩스 상담 () ◦ 전화 상담 () ◦ 메일 상담 () 	
신 청 인	읍 면 동			
	성 명			
	연 락 처			
상담 내용				
상담 의견				
<p>※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p>				
		남원시 마을세무사 (인)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